「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1. 22. 개정 판 (시행 2021. 1. 18.) → 2016. 7. 30. 제정 판 (시행 2016. 7. 30.)

바뀜 7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23/compare?from=1064&to=786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6:0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 ② 센터는 본교 학생, 교직원,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	**제1조(목적)** ① 이 규정은 창업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② 지원단은 본교 학생, 교직원,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소재) 센터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.〈개정 2021-01-22〉	**제2조(소재)** 지원단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.
제3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 1. (예비)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.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.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. (예비)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.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.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〈개정 2021-01-22〉	**제3조(사업)** 지원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. (예비)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.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.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. (예비)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.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.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
제4조(조직구성)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〈개정 2021-01-22〉 ② 〈삭제 2021-01-22〉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	**제4조(조직구성)** ① 지원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지원단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. 1. 창업지원센터 2. 창업교육센터 3. 창업보육센터(청년) ③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.
제5조(센터장) ① 스타트업지원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. ②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.	**제5조(단장)** ① 창업지원단장(이하 "단장")은 본교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한다.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③ 〈삭제 2021-01-22〉 〈전면개정 2021-01-22〉	
제6조(소위원회) 〈삭제 2021-01-22〉	**제6조(소위원회)**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1-01-22〉	**제8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